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5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올림픽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올림픽 기념일 및 기념 주간행사에 대해 명시하고, 참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보험료, 행사운영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념일 및 기념주간 정의(안 제2조제4호)
- 기념행사 운영 방안 규정(안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 유산사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근거 신설(안 제12조)
-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11. 14.
- 회부일자 : 2024. 11. 25.
- 상정일자 : 2024. 12. 5.

### 2. 제안이유

- 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를 추진함에 따라, 올림픽 기념일 및 기념 주간행사에 대해 명시 하고, 참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보험료, 행사운영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념일 및 기념주간 정의(안 제2조제4호)
- 기념행사 운영 방안 규정(안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 유산사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근거 신설(안 제12조)
-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13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국제 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올림픽 기념일 및 기념 주간행사와 참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행사 등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에서 “평창올림픽 기념일”과 “평창올림픽 유치 기념일”, “기념 주간”의 정의에 대하여 신설함.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올림픽 기념일 또는 유치 기념일에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의 계승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올림픽 기념행사 및 주간행사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보험료, 행사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명시하였음.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등을 운영하고, 참석한 주민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불임 관계 법령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

-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 다. 시 · 도유산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의 유치 ·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출자 · 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설립 목적
  - 2. 주요 업무와 사업
  -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6
----------	-----

제출년월일 : 2024.11.14.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올림픽 기념일 및 기념 주간행사에 대해 명시하고, 참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보험료, 행사운영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념일 및 기념주간 정의(안 제2조제4호)
- 나. 기념행사 운영 방안 규정(안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 다. 유산사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근거 신설(안 제12조)
- 라.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10. 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378호, 올림픽체육과-3279(2024.10.02.)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4315(2024. 9. 12.)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예산과-4315(2024. 9. 12.)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1117(2024. 9. 30.)호]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7439(2024. 11. 6.)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7737(2024. 11. 11.)호]

##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창올림픽 기념일”은 2월 9일, “평창올림픽 유치 기념일”은 7월 6일로 하며,  
“기념 주간”은 기념일이 속한 주간을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올림픽 기념일 또는 유치 기념일에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기  
념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시키기”를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고 유산을 계승·확산시키기”로,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올림픽 기념행사 및 주간행사

4. 올림픽 정신 및 유산 계승을 위해 실시하는 국내·외 문화·체육행사 개최

⑤ 군수는 올림픽 개최 및 유치기념 행사 시 참여하는 주민 및 단체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임차료(버스임차료)

2. 식비, 간식비

3. 보험료

4. 행사운영경비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협력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평창올림픽 기념일</u>”은 2월 9일, “<u>평창올림픽 유치 기념일</u>”은 7월 6일로 하며, “기념 주간”은 기념일이 속한 주간을 말한다.</p>
<p>제6조(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6조(평창올림픽 정신의 계승)</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군수는 올림픽 기념일 또는 유치 기념일에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p> <p>① (생 략)</p> <p>② 군수는 <u>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시키기</u>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평창올림픽을 기념하고 유산을 계승·확산시키기</u> -----</p> <p>----- 각 호-----</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올림픽 기념행사 및 주간행</p>

	<u>사</u>
<u>&lt;신 설&gt;</u>	<p><u>4. 올림픽 정신 및 유산 계승을 위해 실시하는 국내·외 문화·체육행사 개최</u></p> <p><u>5. (현행 제3호와 같음)</u></p> <p><u>③ (현행과 같음)</u></p>
<u>3. (생 략)</u>	
<u>③ (생 략)</u>	
<u>④ 삭 제</u>	
<u>&lt;신 설&gt;</u>	<p><u>⑤ 군수는 올림픽 개최 및 유치 기념 행사 시 참여하는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차량임차료(버스임차료)</u></p> <p><u>2. 식비, 간식비</u></p> <p><u>3. 보험료</u></p> <p><u>4. 행사운영경비</u></p>
<u>&lt;신 설&gt;</u>	<p><u>제12조(포상) 군수는 올림픽 유산 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u>&lt;신 설&gt;</u>	

#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올림픽 기념주간행사 추진 및 주민(단체) 경비(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보험료 등) 지원
- 나. 관련조문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 활성화 조례  
(신설) 제6조제2항 군수는 올림픽 기념일 또는 유치 기념일에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신설) 제7조제5항 군수는 올림픽 개최 및 유치기념 행사 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차량임차료(버스임차료) 2.식비,간식비 3.보험료 4.행사운영경비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올림픽 기념주간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주민(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 나. 추계 결과

내 역	금 액	비 고
계	439,000천원	
기념식 개최	50,000천원	
부대행사 개최	50,000천원	예시, 걷기대회, 사진전시
문화공연 개최	300,000천원	
주민(단체) 수송 지원	21,000천원	주민(단체) 1천명 기준 버스임차
주민(단체) 식사 및 간식비 지원	13,000천원	주민(단체) 1천명 기준 식사·간식비
주민(단체) 안전관리 지원	5,000천원	보험가입 등

- 다. 재원조달 방안 : 평창군 자체수입(군비) : 439,000천원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연락처	(033) 330-201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b>세 입</b>						
지방세수입						
<b>세 출</b>				439,000		439,000
올림픽주간 기념행사 (201-03)				439,000		439,000
<b>재원 조달</b>				439,000		43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39,000		439,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439,000		439,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